

7.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

건설교통부령 제167호 1999. 1. 27.

개정이유

정기검사에서 불합격한 건설기계에 대한 재검사 절차를 개선하고, 건설기계조종사의 면허 및 정기적성검사 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규제관련 사항을 정비하고,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주요골자

- 가. 건설기계를 제작·수입하여 판매 또는 전시할 장소로 이동하고자 하는 경우 종전에는 트레일러 등에 건설기계를싣고 이동하였으나, 앞으로는 임시운행 허가를 받아 당해 건설기계를 직접 운행하여 이동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설기계소유자 등의 편의를 도모함(제6조제2항).
- 나. 종전에는 정기검사에 불합격한 건설기계에 대하여 재검사를 받는 경우 시도지사의 정비명령절차를 거치도록 하였으므로 재검사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었으나, 앞으로는 정비명령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자체적으로 정비한 후 재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설기계소유자 등의 편의를 도모함(제23조제5항).
- 다. 해외에서의 임대기간동안에는 건설기계의 정기검사 및 정기정검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설기계 해외임대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함(제24조제3항).

- 라. 5톤미만의 불도우저 및 3톤미만의 지게차를 조종하고자 하는 경우 종전에는 자격시험을 거쳐 조종사면허를 받도록 되어있었으나, 앞으로는 일정한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별도의 자격시험없이 이를 조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동 건설기계를 조종하고자 하는자의 편의를 도모함(제73조제2항).
- 마. 5년마다 실시하는 건설기계조종사에 대한 정기적성검사를 60세미만의 건설 기계조종사에 대하여는 면제하되, 60세부터 5년마다 정기적성검사를 받도록 함으로써 건설기계조종사의 부담을 덜어 줌(제81조제1항).
- 바.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 조종사의 경우 연간 8시간의 정기교육을 받도록 하던 것을 폐지함으로써 동 건설기계조종사의 부담을 덜어 줌(현행 제83조제2항 삭제).
- 사. 정기검사 유효기간을 로우더, 지게차 및 천공기 등은 1년에서 2년으로, 차령 5년이상의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은 6월에서 1년으로 각각 연장함(별표 7).

주택회보